

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6-69
--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6. 8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사유

상위법인 「주민등록법」 현행사항을 반영하고,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명에 띄어쓰기 적용하여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 조례」로 변경
- 나. 제2조 제1호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의 조문 중 “법 제17조의8에 의한”을 “법제24조에 따른”으로 변경
- 다. 제2조 제2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의 조문 중 “법 제18조의2에 의한”을 “법 제30조에 따른”으로 변경
- 라. 제2조 제3호 별칙에 관한 조문 중 “법 제21조”를 “법 제37조”로 변경
- 마.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용어 및 표기를 정비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주민등록법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4. 기타사항

- 가. 입법예고 : 2016. 7. 21. ~ 2016. 8. 10.(제출된 의견 없음)
- 나.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원안동의
- 다.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원안동의
- 라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· 규칙 심의회 심의 · 의결(2016. 8. 16.)
- 마.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
- 바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주민등록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「주민등록법」 제2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장”으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구청장”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으로, “각호의”를 “각 호의”로,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법 제17조의8에 의한”을 “「주민등록법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4조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법 제18조의2에 의한”을 “법 제30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법 제21조”를 “법 제37조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2조에 따라”로, “시정명령등”을 “시정 명령 등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	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주민등록 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마포 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 다)이 관리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 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주민등 록법」 제2조제2항에 따라 서울 특별시 마포구청장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조(권한의 위임) 구청장이 관 리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 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 에게 위임한다. 1. 법 제17조의8에 의한 주민등 록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 2. 법 제18조의2에 의한 주민등 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.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 치 4. (생 략)	제2조(권한의 위임)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-- 각 호의 -- 그 밖의 -- ----- 1. 「주민등록법」(이하 "법"이 라 한다) 제24조에 따른 -- 2. 법 제30조에 따른 ----- ----- ----- 3. 법 제37조 ----- -- 4. (현행과 같음)
제3조(지휘·감독) ① 제2조의 규 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동장에게	제3조(지휘·감독) ① 제2조에 따 라 -----

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·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----- 시정명령 등 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